

200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제

◇주택 종부세대상 확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며, 과세방법은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가고,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붙는 농특세(10%)와 교육세(20%)도 인하된다.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 =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채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천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3주택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지방세제 개선 =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7월, 9월 부과하지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면 일시에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은 오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은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한다.

지방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

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 경감액은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이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 금융·보험

◇새 5천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을 1월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천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돈세탁 방지 강화 = 내년 1월18일부터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확대 = 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 = 8월부터 손·생보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 = 내년 중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5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보험료 조정 =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 = 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

2006

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게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들어진다.

◇초장기 국고채 발행 = 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2.4분기중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도 도입된다.

◆ 부동산·건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 = 2월 말께부터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내년 1월부터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 =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

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강화=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일회성인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토(土) 파라치 제도=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 = 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한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지역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 의무이용기간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이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丙戌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건축주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도입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내에서 예치해야 한다.

◇소규모 공사 직접 시공의무제 = 도급액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내용 중 30% 이상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년 이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00평 이상, 이외 160평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연면적 200평 이하, 3층 이상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 =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건설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

에서 3명 이상 사망치 노동부 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 과학, 정보통신, 환경

◇전기요금 인상 =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 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된다.

◇원유,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인상 = 고유가시대에 중장기 에너지, 자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2006년 2~3월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ℓ 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된다.

◇신제품(NEP) 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제품 중 실용화가 완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기술성, 성능, 품질, 품질보증시스템을 평가, 우수한 제품에 NEP인증마크를 부여한다.

◇SKT, 내년부터 CID요금 무료화 = SK텔레콤은 1월1일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하며,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2006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 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 =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신기술(NET)인증제도'와 '신제품(NEP)인증제도'로 통합, 운영, 이들 인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 제반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인증제도 신설=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ESCO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중 우수 ESCO 인증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ESCO 인증대상 업체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획득한 업체를 1월부터 우수 ESCO로 인증한다.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되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낮아진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 시간당 처리용량 25~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레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 교육, 복지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

丙戌年

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되며, 월 2회 토요일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되며,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 =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각각 공개해야 한다.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000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인원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 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모 그룹홈이 9개소에서 최대 16개소로 늘어나고 인천에 부자(父子)시설과 전국에 부자그룹홈을 신설하며, 울산에 미혼모시설이 신축된다.

◆법원, 검찰, 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수혜 대상이다. 변호사 비용만 지원되고 공고료·송달료는 본인 부담이다.

2006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 = 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one-stop)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된다.

◇검찰 콜 센터 운영 = 전화를 해당 부서로 바꿔주는 교환센터가 상담기능을 겸한 콜 센터로 개선돼 민원인들은 콜센터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 재정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법원은 시범실시한 뒤 절차 및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해 적용 법원과 서비스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 시행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천만~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된다. 국고손실과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금액도 올라간다.

◇휴대전화 민원 회신 = 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 회신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

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행정

◇교통체계 개선 = 지하철 26개역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된다.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티머니 교통카드' 호환이 가능토록 개선하며, 인터넷과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으로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계속 차등 지원된다.